

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 목적 : 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를 제공하며, 이에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(보호자)는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 - 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 -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 -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2. 계약기간 :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.
3. 준수사항 :
 - ① 이용계약은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,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.
 -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한 복지용구 공급계약서 서식을 이용한다.
4.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,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 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.
5.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(기관) 와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(보호자)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 - ① 기관의 의무
 - 가. 대여제품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/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.
 - 나.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함을 설명한다.
 - 다.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,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.
 -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
 - 가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 - 1)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/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 - 2)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
 - 나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 - 1)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.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 - 2)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 - 3)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, 입원/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
 - 4)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
 - 5)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.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6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 -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,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.
 - ② 연 한도액(공단부담금+본인부담금)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.
 -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.

- 일반대상자 : 15%
- 경감대상자 : 6~9%

- 기초생활수급자 : 본인부담금 없음

수급자 중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장기 요양입소이용신청을 하여야 함 (장기요양기관 입소.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)

- 또한 대여가격에는 배송비,설치,철거비,수리 및 부품 등의 교체로,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다.

7. 계약의 해제

- ①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(또는 보호자)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가.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

나.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
다. 6회 이상 이용료를 납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
- ② 수급자(또는 보호자)는 그 외에 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.